

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

- 부두완 의원 외 18인

2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잡종재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, 그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고 이 조례에서는 서울시 잡종재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하고,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경지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40에서 10까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종교단체 등이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로 인정하지 않고 1000분의 50의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
- 종교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며, 실제 여타 분야에 있어서는 종교단체에 대해 세금 감면 등 행·재정적 지원을 통해 종교활동을 적극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므로 시민의 종교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이를 매개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‘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’에 대해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서울시 잡종재산을 종교의 보급,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그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대부료를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.(안 제23조 제1항 신설)

4. 검토요지

- 안 제23조 제12항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 신설
 -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때 그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다만,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000분의 25 이상, 농경지일 경우 실경작자에게 1000분의 10 이상까지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
 - 이에 따라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도 특수한 경우로 인정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제 23조 제12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 - 현재 종교시설이 사용하는 시유지 점유현황은 총 6건에 약 1,881㎡인데 불교사찰이 1건, 교회가 5건으로서 부과된 변상금은 총 3억 827만원이며, 이중 문제가 되고 있는 충청사는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 2억 8,991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기타 2개 시유지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.
 - 한편 현행 조례 제23조에 근거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0분의 25 이상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은 한국체육대학교 등 5개 학교법인이고 대부면적은 총 15,733㎡, 2003년 대부료는 8,737만 3천원으로 나타났음.
 - 그러므로 조례개정안대로 종교시설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경우 법령위반사항은 아니나,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법인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대부료를 감면요구 할 것이 예상됨.

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